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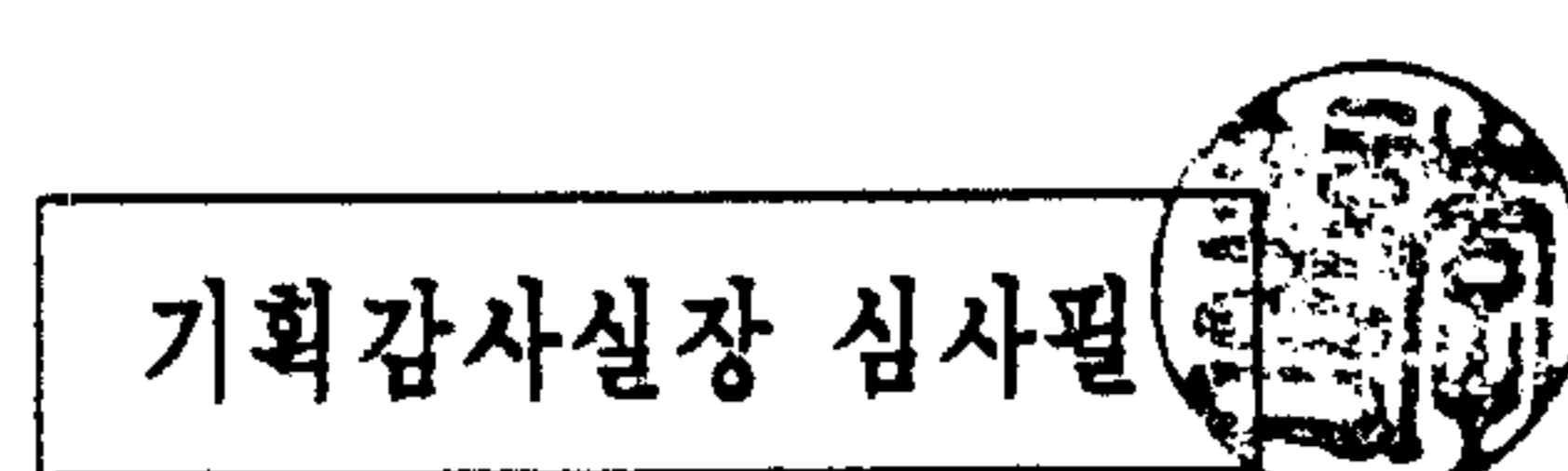
|              |                           |
|--------------|---------------------------|
| 의안번호         | 제 43 호                    |
| 의 결<br>년 월 일 | 1998. 11. 26.<br>(제 79 회) |

|         |
|---------|
| 의 결 사 항 |
| 의안가결    |

##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제출자         | 보 은 군 수       |
| 제출<br>년 월 일 | 1998. 11. 26.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 보은군공유재산조례 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43 |
|----------|----|

제출년월일 : 1998. 11. / /

제출자 : 보은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재산의 증감 및 현황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도록 작성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함.

####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의 대부 및 매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개정안 제19조의3)

#### 라.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 마.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개정안 제22조)

## 바.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적용기준

-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은 1,000분의 25 요율 적용
- 대부요율을 1,000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 삭제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목적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영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재산은 적용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 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규정함.(개정안 제23조의3)

## 아. 토석채취료 산출

- 토석채취료 산출시 원석의 시가결정을 위한 가격평정조서 작성에 있어서 평정근거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거래시가조사서를 첨부도록 함.

## 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고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함.

## 차. 대부료의 납기 및 연체이자

-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부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고, 매각대금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카. 수의계약 매각범위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함(개정 제39조)

## 타. 매각대금의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재산가격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39조의 3)

#### 파. 관사의 구분 및 사용료

- 관사의 설치규정에 실과장 및 읍면장용을 삭제하고 시설관리사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근 거 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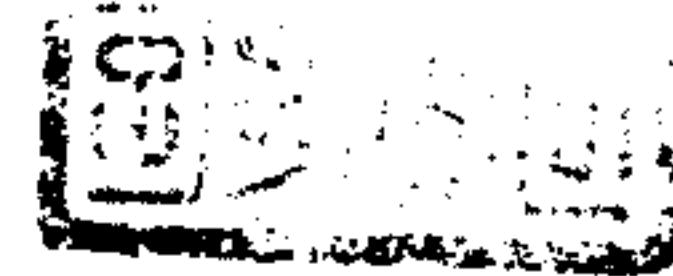
4. 사전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98. 10. 20 ~ 11. 8)

첨부 : 1.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충청북도 회계13330-1538('98. 8. 24)호

4. 관련법규(부분발췌)



##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 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 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 제2항중 “토지과세시가준표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6항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제7항을 삭제하며,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여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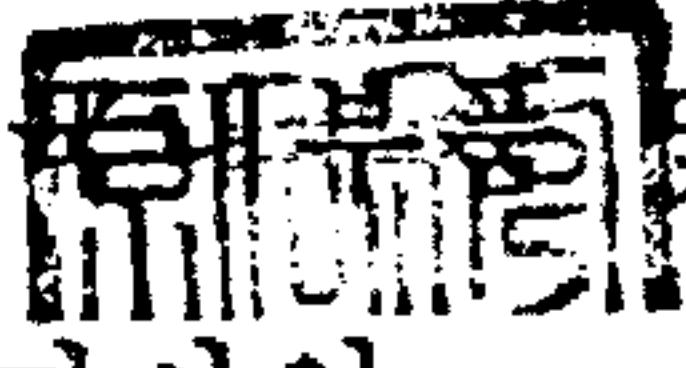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사. 제19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 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사,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   |                           |
|-------------------------------|---|---------------------------|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                               |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하는 총면적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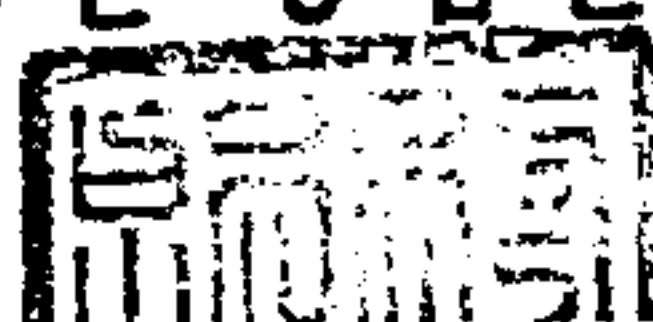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 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자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

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투자 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 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실·과장 및 읍·면장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군수 관사
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 기타 관사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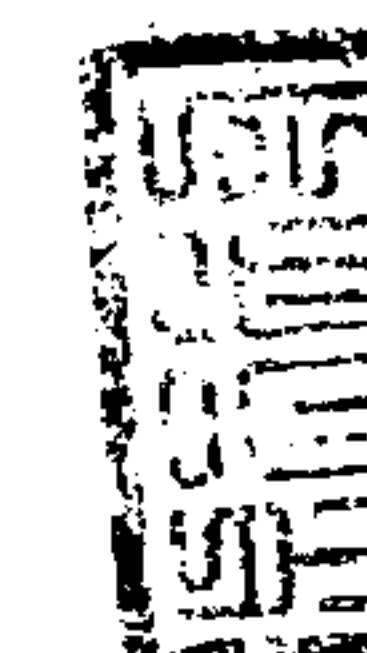


| 현 황  | 개 정 안   | 사 유  |
|--|---|--|
| <p>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 잡종재산<br/>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br/>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br/>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br/>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br/>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p> | <p><u>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u></p> <p><u>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u></p> <p><u>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u></p> <p><u>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u></p> <p><u>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u></p> <p><u>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u></p> <p>제20조 &lt;삭 제&gt;</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p> | <p>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li>-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국유 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li> <li>-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외국인 투자지정 및 및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매각 허용</li> <li>-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경우(예 : 세라믹단지, 화학산업단지등) 대부·매각 허용</li> </ul> <p>○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p> <p>○ 10년이내 연 5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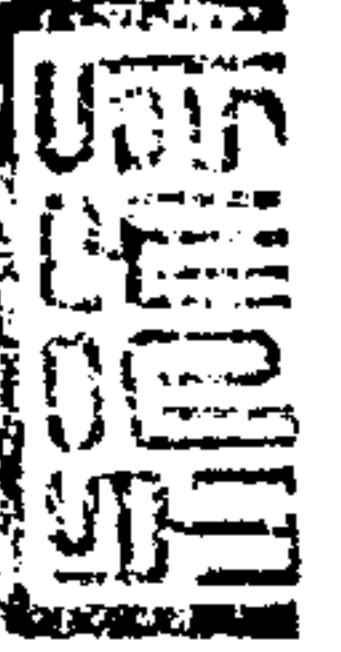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p>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9조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li> <li>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li> <li>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인을 연장하는 경우</li> <li>도시재개발법제4조의 규정에의한 주택개량재개발 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에게 매각하는 경우</li> </ol> | <p>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li> <li>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li> <li>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에게 매각하는 때</li> <li>군수가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합납부한</li> </ol> | <p>는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함</p> <p>*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 원용</p> <p>○ IMF시대 경제난으로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 해주므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제4호 관련)</p> <p>* 부산광역시의 경우(부산광역시 회재 41320-2102 '98. 7. 13. 공문 참조)</p> <p>①매매계약 해제('97. 7. 1 ~ '98. 7. 10)</p>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p><u>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u>7.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u>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u></li> <li><u>2. 제3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u></li> <li><u>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u></li> </ol> <p><u>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u></p> | <p><u>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대금 : 164,340백만원(17건)</li> <li>· 대금납부 : 85,448백만원</li> <li>· 반환대금 : 75,095백만원</li> </ul> <p><b>②매매계약 해제요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대금 : 251,268백만원(21건)</li> <li>· 대금납부 : 136,650백만원</li> <li>· 반환예상액 : 111,528백만원</li> </ul> <p><b>③분납방식매각 체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대금 : 132,222백만원</li> <li>· 이 자 : 319백만원</li> <li>· 연 체 료 : 8,994백만원</li> </ul> <p>○ 10년이내 연 8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과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상 만을 규정</p> <p>*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 원용</p> <p>○ 5년이내 연 8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p> |

| 현<br>황 | 개<br>정<br>안  | 사<br>유  |
|--------|--|---|
|        | <p>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p> <p>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p> <p>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이 인정하는 때</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때</p> | <p>대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함</p> <p>*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3항 원용</p> <p>○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분할납부 허용</p>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①(생 략)<br/>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br/>         ③~⑤(생 략)<br/>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br/>         ⑦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 할 수 있다.</p> | <p>3.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때<br/>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br/>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 하는 때</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현행과 같음)<br/>         ② .....<br/>         .....<br/>         .....<br/>         ..... 토지시가표준액 .....<br/>         .....<br/>         ③ ~ ⑤<br/>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위한 건물에 한 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br/>         ⑦〈삭 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988호)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li> <li>○ 주거용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정할 경우 무단점유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므로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li> <li>○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100분의3이상의 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 불요</li> </ul>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신설〉 | <p>⑧ 영 제88조제1항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계산할 수 있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제8항에 의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산정</li> </ul> </li> </ul>                 |
| 〈신설〉 | <p>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   |
| 〈신설〉 |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과 국유재산과의 동일한 규정 적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과 동일한 규정 적용 필요</li> </ul> </li> </ul> <p>* 경기도의 경우<br/>고도기술 수반 사업분야로서 조세감면 수혜</p>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 <p>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p>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p>  | <p>업체는 '97년말 현재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약 8%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책 마련</li> <li>※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실태 및 평균 규모<br/>'97년말 현재 총 461개 외국인 투자기업(가동기준) 중에서 1000만불 이하의 소규모투자가 전체의 89%이고 제조업부문 평균 직접투자 금액은 약 400만불에 불과함.</li> <li>○ 첨단기술 중심의 지원책에서 탈피하고 현재의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li> <li>※ 경상남도내 외국인 투자기업(158개)의 고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명 미만 : 93개 업체(2,988명)</li> <li>· 100~500 : 55개 업체(10,858명)</li> <li>· 500~1,000 : 8개 업체(5,629명)</li> <li>· 1,000~2,000 : 1개 업체(1,273명)</li> <li>· 2,000이상 : 1개 업체(2,875명)</li> </ul> </li> <li>○ 국가 및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 지원</li> <li>※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부품 사용 현황(96년말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국내부품 사용 : 46%</li> <li>· 국내부품 사용 및 모기업 조달 병행 : 28%</li> </ul> </li> </ul> |

| 현 行 | 개 정 안  | 사 유  |
|-----|--|--|
|     | <p><u>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u></p> <p><u>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u></p> <p style="text-align: center;"></p> <p><u>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사업</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 필요</li> <li>○ 기존의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공정등 생상시설을 지역내로 이전해 올 경우에도 산업입지에 관한 지원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의 경우에는 기존 투자 업체가 당해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경우에 소요되는 이전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음</li> </ul> </li> <li>○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 또는 추가투자를 촉진시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장증설에 필요한 산업부지 지원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계없이 신규투자와 동일하게 산업부지를 지원함으로서 추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음</li> <li>* 對韓 외국인투자의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50%가 한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됨</li> <li>• 제3국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수출증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li> </ul> </li> </ul> </li> </ul>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 <p><u>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u></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u>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u></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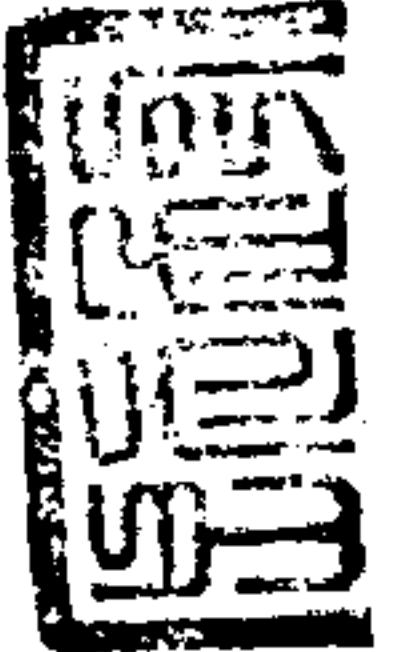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 <p><u>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u></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p> |  |
| <p>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③(생략)</p> <p>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사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사 사정경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사, 기타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 <p>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③(생략)</p> <p>④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br/>.....<br/>.....</p> <p>⑤(현행과 같음)</p>   | <p>○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4항의 “매매실례조사 조항 삭제 및 현실규정에 맞는 용어 사용”</p>   |
|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p> |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p>   | <p>○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p>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                |                                   |   |
|--|--|---|--|-------------------------------|--|----------------|-----------------------------------|---|
| <p>우에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가<br/>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br/>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br/><u>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u></p> <p>2~3 (생 략)<br/>&lt;신 설&gt;</p> | <p><u>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u></p> <p>2.~3. (현행과 같음)</p> <p>4. <u>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br/>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br/>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br/>을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br/>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u></p> <table> <tr> <td>대부를 받은 자가<br/>전용으로 사용하는<br/>면적</td> <td> </td> </tr> <tr> <td>대부를 받은 자가<br/>다른 사람과 공용      X</td> <td> </td> </tr> <tr> <td>으로 사용하는<br/>총면적</td> <td>공용으로 사용하는<br/>자들이 전용으로<br/>사용하는 총면적</td> </tr> </table> <p>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br/>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br/>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br/>일부터 12월 말까지<br/>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br/>부 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br/>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br/>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p> | 대부를 받은 자가<br>전용으로 사용하는<br>면적  |  | 대부를 받은 자가<br>다른 사람과 공용      X |  | 으로 사용하는<br>총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br>자들이 전용으로<br>사용하는 총면적 |  |
| 대부를 받은 자가<br>전용으로 사용하는<br>면적   |  |   |  |                               |  |                |                                   |   |
| 대부를 받은 자가<br>다른 사람과 공용      X  |  |   |  |                               |  |                |                                   |   |
| 으로 사용하는<br>총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br>자들이 전용으로<br>사용하는 총면적  |   |  |                               |  |                |                                   |   |
|  |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br/>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br/>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br/>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br/>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br/>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br/>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br/>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li> <li>○ 현행 제2항의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경작목<br/>의 대부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br/>전에 납부하도록 명백히 함</li> </ul> |  |                               |  |                |                                   |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p>② 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 <p>③ 경작목적으로 대부분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li> </ul>  |
|   |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③ 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li> <li>○ 제22조제1항제4호 개정사유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계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IMF시대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계약해제요구와 이에 따른 반환금 증가등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함</li> </ul> </li> </ul> |
|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생 략)<br/>②~③ &lt;삭 제&gt;</p>  |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br/>②~③ &lt;삭 제&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문제를 해소</li> <li>○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운영시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li> </ul>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립에 대해서는 <u>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u>   | ④ .....<br>.....<br><u>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u> .....   | 협의하여야 한다'였으나 특별회계 폐지후 현 조례는 공유임야관리   |
| <u>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u>   | <u>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u><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br>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토지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 - 전담부서에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함  |
| <u>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m'이하, 시지역에서는 300m'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m'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u> | <u>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u>   |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만약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 매각면적제한을 두어서는 안됨 |
| <u>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의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u>                    |  | ○ 폐천부지의 매각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매각면적의 상한만 규정  |
| <u>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m'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m'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u>   |  |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p>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하하여 위 매각법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 <p>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br/>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br/>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br/>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동기를 하여야 한다.<br/>     ⑤ 영 제95조제2항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등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등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br/>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br/>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p> | <p>○ 현행 본문 조항을 제4항으로 함</p>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 <p>서는 1,000제곱미터아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점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법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  |
| <p><u>&lt;신 설&gt;</u></p> <p>제39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가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산</p> |  |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 <p>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p> <p>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p> <p>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p> <p>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외·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 필요</li> <li>○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시 부대시설 부지로 감면 필요</li> <li>○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 필요</li> <li>○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부문(생명공학, 첨단전기, 전자부품, 정밀, 운송기계 등)의 투자시 공장용지 저가 제공 필요</li> <li>○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1,000만 달러 이상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li> </ul> |

| 현<br>행  | 기<br>정<br>안   | 사<br>유  |
|---|---|---|
| 제50(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실장 및 유민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 <p><u>의 재산</u></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p> <p>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p> <p>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p> <p>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p> <p>제50조(정의) .....<br/>.....시설관리사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감면 필요</li> <li>○ 50% 감면 사유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낮으므로 차등화 필요</li> <li>○ "</li> <li>○ "</li> <li>○ 진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li> <li>○ 관사정비 계획에 따름</li> </ul> |

|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
| <p>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p> <p><u>제51조(관사의 구분)</u>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관사 : 군수 관사</li> <li>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li> <li>3. 3급관사 : 1급 내지 2급 이외의 관사</li> </ol> <p><u>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u> ①관사를 사용한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li> <li>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li>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li> </ol> | <p>.....</p> <p>.....</p> <p><u>제51조(관사의 구분)</u>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관사 : 군수 관사</li> <li>2. 2급관사 : 부군수 관사</li> <li>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관리사 등</li> </ol> <p><u>제57조(사용료 면제)</u>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li> <li>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li>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li> </ol> | <p><input type="radio"/> 관사정비 계획에 따름</p> <p><input type="radio"/> 관사정비 계획에 따름</p> |
|  |  |   |

관 인 생 락

- 34 -

## 월 관 미 력 즐 기 관 충 북

## 충 청 북 도

우360-765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0431)220-2341 / 행 2341 / (FAX)2349  
 처리과 : 회계과 과장 신기철 / 재산관리과장 김태관 / 담당자 김종호

문서번호 회계13330-1538

시행일자 1998. 8. 24.

(경 유)

받는곳 더 01 - 12

참조 재산관리담당과장

|      |       |     |     |
|------|-------|-----|-----|
| 선 결  | 부군수   | 1d  | 지 시 |
| 접 시간 | 8. 26 | 결 재 | 과장  |
| 수 번호 | 1538  | 재 공 | 제작  |
| 처리과  | 회계과   | 공   |     |
| 담당자  | 이종재   | 람   |     |

## 제 목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관련 후속 조치

1.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98. 7. 16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바 있는바

2.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포함) 개정준칙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본 준칙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입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각 자치단체는 이점을 유념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차질없도록 조치

나. 시·군에서는 본 준칙안을 상위 법령에 맞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을 맞게 조정하여 개정토록 조치

다. 본 준칙에서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뜻하며 도는 시·군을 뜻하므로 각 자치단체에서 개정안 작성시 유의

라. 본 준칙 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제1항·내지 제5항,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규정사항은 외국인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등을 기준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지역실정에 불부합하는  
경우에는 재조정하여 개정

마. 본 준칙 제26조제4항(대부료등의 납기) 및 제28조제3항(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규정사항은 이번 발생한 대규모 수해대책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  
여 조속한 시일내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고, 조례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로서 대부료 납기유예,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방안 검토 시행



사. 본 준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이번 조례개정시 전부 포함하여 조례를 일제 정비

불임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중 개정조례 준칙. 끝.

충 청 북 도 지 사

## 관련법규(부분발췌)

###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현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 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0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82조제1항 및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와 가진 철거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분의 3이상의 을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제96조제1항중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를 지방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조제4항중 “매매실례조사,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매매실례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을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대령 제 15,836, 98. 7. 16)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법시행령

부 칙 <96·4·2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보지~~<sup>부지</sup>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 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장에 매각하는 경우
-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토지중 제1항제4호의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 (건물사용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서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